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희걸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42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0월 21일

발 의 자 : 김희걸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우형찬 · 김기대 · 우미경 ·
강구덕 · 남창진 · 박운기 ·
한명희 · 문형주 · 오승록 ·
장우운 · 김혜련 · 유동균 ·
박기열 · 김영한 · 김진철 ·
김춘수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매각가능 항목 중 일부 항목의 기준일이 행정자치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과 불일치하여 이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38조제1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.(안 제38조제1호)
- 나. 제38조제4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.(안 제38조제4호)
- 다. 제38조제8호의 경우에 대한 기준일을 현행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함.(안 제38조제8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행정자치부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.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호 중 “2003년 12월 31”일을 “2012년 12월 31”일로 한다.

제38조제4호 중 “2003년 12월 31”일을 “2012년 12월 31”일로 한다.

제38조제8호 중 “2003년 12월 31”일을 “2012년 12월 31”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